

韓國法史學會

法史學研究

〈第 62 號〉

민속원

2020.11.

목 차

발간사 4

〈특집 논문 : 1960. 4. 19 혁명과 법제의 변화〉

- 4·19혁명과 1960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전종익 / 9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문준영 / 47
-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4·19 혁명과 반부패제도 김대홍 / 139

〈일반 논문〉

- 전통 중국사회에서의 가족과 가산 박세민 / 173
-니이다 노보루와 시가 슈조의 논쟁을 중심으로-
-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사례연구 이철우 / 203
-D. 43.3.1.5에 관하여-

〈서평〉

- 임대희 엮음, 『관례로 본 송대사회』(민속원, 2019) 홍성화 / 267

학회소식 / 283

韓國法史學會 會則 / 290

韓國法史學會 研究倫理 規程 / 294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 299

法史學研究 刊行規程 / 302

法史學研究 投稿 및 審査指針 / 306

掲載費 規則 / 312

원고 집필 요령 / 313

Contents

〈Special Articles :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and Changes in Legislation〉

- Constitutional meaning of 4.19. Revolution and 1960 Constitution
Chon, Jong ik / 44
-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nd the Lawyers' Politics
Moon, Joon-Young / 135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Members and the Movements of Bar Associations –
- The April 19 Revolution and Anti-CorruptionKim, Dae Hong / 168

〈Articles〉

- Family and Family Property in Traditional Chinese Society
Park, Sea Min / 200
- A case study on the interdict Quod legatorum : D. 43.3.1.5
Lee, Cheol-Woo / 263

〈Book Review〉

- Im, Dae-heui, *The Society of Song China through Judicial Precedents*
Hong, Sung-hwa / 267

발 간 사

지난 겨울 발생한 코로나19가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일상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래서 학문적 소통도 어렵고 학회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이 힘든 시기에 『법사학연구』 제62호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법사학연구』 제62호는 논문 다섯 편과 서평으로 채웠습니다. 올해는 4.19혁명 6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1960. 4. 19. 혁명과 법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 편의 글을 특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상 제도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각종 정치개혁을 검토한 전종익의 논문은 4.19혁명과 그 성과가 한국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재음미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에 대한 법조인의 대응을 분석한 문준영의 논문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 민주화’의 험난한 정치적 여정을 치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비록 5.16쿠데타로 무위에 그쳤지만,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부정축재’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법적 과정을 추적한 김대홍의 논문은 反政과 법치주의 이념의 길항관계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 논문들은 4.19혁명 60주년의 헌정사적 의의, 나아가 현대사에 대한 회원들의 진지한 고민을 공유한 결과입니다. 특집을 기획한 전종익 회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의 중국법제사 연구에 있어 두 대가인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 1904-1966)와 시가 슈조(滋賀秀三, 1921-2008) 사이의 ‘중국 전통 가족의 구성과 가산’에 대한 논쟁을 중국에 대한 시각과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소개한

박세민의 논문은 두 대가의 입장과 방법론의 차이를 잘 정리하였고, 학술적 논쟁이 거의 없는 우리 학계에 훌륭한 자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활발한 학술논쟁과 이를 통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로마법의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한 이철우의 논문은 로마법에서 유증의 변모과정을 적절히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로마법의 소개를 넘어서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도 큰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법사학회와 한국학계에 중국법제사를 정열적으로 소개·연구한 임대희 교수가 작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남송시대(1127~1279)에 편찬된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을 분석하고 그 논문들을 묶어서 『판례로 본 송대사회』를 간행하였는데, 홍성화가 서평으로 발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이름다운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 학술대회와 교류의 가능성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마 이 방향이 정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상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학술활동의 성과를 옥고로 투고하신 회원님들과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간사 김준현군과 민속원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법사학연구』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0. 11. 30.

『법사학연구』 편집위원장